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 모든 분야	영국은 자국이 당사국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영국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 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모든 국가	무기한	역진 방지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적인 대우를 보호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 철도 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운수권 및 운영 조건을 규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 운송 기반 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3.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영국과 제3국가 간 체결된 (북해 운송 - 도로/철도 포함) 국제 도로 운임 및 여객 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의 다음에 대한 규정 (a) - 계약 당사자 간 또는 계약 당사자의 영역을 지나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을 각 계약 당사자에 등록된 운송 수단에 유보하거나 제한 또는 (b) - 그러한 운송 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알바니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 운송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4. 항공 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그리고 (d) 지상 조업 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 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는 모든 국제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및 미래의 국제 협정을 보호를 위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5. 항공 운송 서비스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판매 및 마케팅	영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등한 대우가 컴퓨터 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의 본국에서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컴퓨터 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의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함.	컴퓨터 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가 소재하는 모든 국가	무기한	컴퓨터 예약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다자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의 필요성
6. 내수 운송	내륙 수로에의 접근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에 관한 국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운영자를 위해 운수권을 유보하는 조치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무기한 일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통합협정이 체결되거나 완성될 때까지만 예외가 요구됨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 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7. 해상 운송	부속서 7-가에서 대한민국의 약속을 넘는 조치로서 해운 회사의 설립,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조치	특정되지 않음.	무기한	전반적인 무역 관계의 맥락에서의 국제 협정
8. 수산	영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는 수산 관련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 간 국제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그리고 미래의 양자 및 복수국 간 국제 협정의 보호를 위해 요구됨.
9. 모든 분야	영국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설립권을 규정하는 조치	산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그리고 교황청	무기한	영국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연계성

대한민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기술)
1.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서명된 다음의 분야에 관한 국제 협정 상 국가들에 대해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가) 수산, 또는 (나) 해난 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2.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자국이 당사국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 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3. 항공 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그리고 (d) 지상 조업 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 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항공 운송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국제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4. 취약 집단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에겐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5. 사회 서비스	대한민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보건, 그리고 교육
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대한민국은 편방향 위성 전송(DTH) 및 직접 방송 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와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보장과 관련한 국제 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7.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서명된 철도 운송 분야에 관한 국제 협정 상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8. 운송 서비스 -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택시 및 정기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	대한민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9. 운송 서비스 -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 운송 서비스는 제외)	국제 해운 회사에 의한 컨테이너 화물 도로 운송(카보타지는 제외)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0. 운송 서비스 - 내수 운송 서비스 및 우주 운송 서비스	대한민국은 내수 운송 서비스 및 우주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1. 교육 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대한민국은 유아·초등·중등 교육, 보건·의료 관련 고등 교육, 유아·초등·중등 교원 양성 고등 교육, 법학 전문 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원격 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한 성인 교육은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 유보 항목은 해외 용도를 위한 교육 시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 교육 정책에 따라 교육 시험을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 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2. 사회 서비스 – 보건 의료 서비스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216호, 2008.12.26.)」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526호, 2009.3.25.)」에 규정된 의료 기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 의료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3.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 제작 서비스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 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4. 운송 서비스 －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와 연안 해상 운송	대한민국은 아래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 해상 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국제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하고 면허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연안 해상 운송은 대한민국 선박에 유보되어 있음. 연안 해상 운송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항구 간 해상 운송을 포함함. 대한민국 선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 (a)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설립 기관이 소유한 선박 (b)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c)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서,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 책임자, 회장, 또는 유사한 주요 수석 상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기업 소유의 선박.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